

평창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1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평창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
- 자활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·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함.
- 이에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평창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의 받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지역자활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
- 추진 필요성
 -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,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평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- 지역자활센터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(자활관련 교육,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·상담·직업교육, 창업지원 등)
 - 자활근로사업 전반
(계획 및 추진, 사업장 운영 및 관리, 참여자 관리, 자활급여 위탁 등)
 - 지역자활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그 외 자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53-3번지 일원
- 시설규모 : 연면적 969.52m², 지상 2층
- 배치현황
 - 1층 : 자활사업단 사업장, 조리실, 전처리실, 휴게실 등
 - 2층 : 센터사무실, 교육장, 서고, 상담실, 회의실 등
- 위치도 및 조감도



※ 현재 임시시설 임차 중이며, 시설 준공('26.6.) 후 입주 예정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2026. 7. ~ 2031. 6. 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수탁자격 : 공고일 기준 주 사무소가 평창군 소재의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운영예산('25년 기준) : 1,694백만원
 - 자활근로사업비(인건비, 사업비) : 1,327백만원
 - 센터운영비(인건비, 운영비) : 324백만원
 - 자활교육훈련(사업비) : 6백만원
 - 자활사례관리(인건비) : 37백만원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,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운영과 민간단체와의 협력·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
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-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참여자 관리와 자활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- 자활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와 외부재원 확보가 요구되나, 직영 운영의 경우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 범위와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.
 - 반면 민간위탁 방식은 전문성과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모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어, 직영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함.

자. 추진계획

- 평창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: 2025. 12.
-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: 2026. 1.
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·결정 : 2026. 2.
- 보건복지부 심사·지정 결정, 지정서 교부 : 2026. 3 ~ 4.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6. 5.
- 평창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실시 : 2026. 7. ~ 3031. 6.(5년)

관계법령 발취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·민간기관·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(이하 “자활사업실시기관”이라 한다)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